

의안번호	제 473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
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발의자	임순묵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9월 27일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(임순묵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73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27.
발 의 자 : 임순묵, 이광진, 강현삼,
김봉희, 박병진, 장선배,
임회무

1. 폐지이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 권한이 시장 · 군수에게도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서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협 의 :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협의되었음
- 라. 입법예고 : '16. 9. 5. ~ '16. 9. 25.

충청북도 조례 제 473 호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지방재정법]

제32조(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)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자동차관리법]

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1조, 제45조의3제1항,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 번호판발급대행자, 자동차검사대행자, 종합검사대행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(이하 "정지처분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8.6.>

[자동차관리법 시행령]

제15조(과징금의 부과·징수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(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9., 2002.12.31., 2007.12.31., 2008.2.29., 2013.3.23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9., 2008.2.29., 2013.3.23.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9., 2008.2.29., 2013.3.23.>

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6.6.28.>

⑤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

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16.6.28.>

- 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

참 고 자 료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

(일부개정) 2001-02-09 조례 제 02641호

(일부개정) 2010-06-30 조례 제 3265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1. 2. 9)

제2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 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 별지 제35호서식의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2. 9, 2010. 6. 30>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

제3조(과징금 처분대장) 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등) ① 도지사는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(내부위임 포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2. 9 조례 제26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6. 30 조례 제3265호)(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